

# 검사대상 승강기 및 수수료 안내

[고객안내번호 : 4013-1812-0027-5]

## 1. 건물정보

건물명	서울시청서소문별관
건물주소	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(서소문동)
안전관리자	이 * 호 (교육유효만료일자 2020.11.28 일까지) 장 * 용 (교육유효만료일자 2019.09.09 일까지)

## 2. 고객전용납부계좌 (납부금액 : 581,020원)

국민은행	52659014446186	기업은행	08207175497382
농협은행	79016636653620	신한은행	56209190122631
우리은행	27493745518847	우체국	81081280943195

※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승강기민원24에서 검사신청 시 입력한 정보로 발행됩니다.  
(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수정은 발급일로부터 익월 10일까지만 가능)

## 3. 검사대상 승강기 및 수수료

검사종류		정밀검사		검사대수		2대		총수수료		581,020원	
순번	검사주기 도래일	호기 (설치장소)	승강기 고유번호	승강기형식	승강기종류	운행층수/ 주행길이(m)	검사수수료 (*휴일야간)	번호판 수수료	분동 수수료	부가세	
1	2018.12.04	6(별관2동-1)	0040-414	로프식	승객용	8	191,100	0	73,000	26,410	
2	2018.12.04	7(별관2동-2)	0040-415	로프식	승객용	8	191,100	0	73,000	26,410	
<b>합계</b>							<b>382,200</b>	<b>0</b>	<b>146,000</b>	<b>52,820</b>	

※ 동일건물 내 여러 대의 승강기에 대하여 관리편의 등을 위하여 검사주기를 통합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"승강기민원24"에서 승강기 검사주기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(승강기민원24 → 민원신청 → 행정민원 → 승강기 검사주기 조정신청)

※ 완성검사, 수시검사, 정밀안전검사 분동수수료 안내

- 「승강기 안전검사기준」(행정안전부고시) 제17조와 관련하여 정격하중이 5,000Kg을 초과하는 승강기는 수검자(승강기 관리주체 등)가 분동(하중시험을 위한 무게추)을 직접 준비하여 하중시험을 받아야 합니다. 이 경우 분동수수료가 제외됩니다.

문의 : 고객센터 1566-1277

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

